

국외출장계획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성명	민영훈	직급	전문연구원	보안교육 수강여부	O / X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Rhodes Academy of Oceans Law and Policy) 참석							
관련사업 (예산항목)	- 「독도·해양법 연구센터 운영」(일반)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출장기간	2026.06.26.(금) ~ 2026.07.19.(일) (21박 24일)			출장지		그리스(로도스)		
출장일정	일정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6.26.(금)	오후	부산(15:50)→김포(16:55)		이동		KE1822	
	6.27.(토)	오전	서울(21:50)→헬싱키(05:30)		이동		AY042 AY1863	
		오후	헬싱키(15:45)→로도스(19:40)					
	6.28.(일)	오전	휴일		휴일			
		오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오리엔테이션 및 리셉션			
	6.29.(월)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해양법 역사, 영해, EEZ 등			
		오후	Hotel Mediterranean		리셉션			
	6.30.(화)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해협, 군도, 해저 등			
		오후			항해의 자유 워크숍			
	7.1.(수)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대륙붕, 기후변화, 극지 등			
		오후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한-그리스 해양정책협의회 현지 사정으로 행사 취소)			
	7.2.(목)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공해 등			
		오후			해양과학조사 워크숍			
	7.3.(금)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해양법회의, 심해저, 분쟁해결 등			
		오후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7.4.(토)	오전	Lindos, Rhodes Island		현장학습 및 네트워크			
		오후						
	7.5.(일)	오전	휴일		휴일			
		오후						
	7.6.(월)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대륙붕 외측 한계 경계, 기선, 해양경계 등			
		오후			(특별강의) 해저 전선 및 관선			

	7.7.(화)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섬, 중첩해역의 활동 등	
		오후	Hotel Mediterranean	해양경계 워크숍	
	7.8.(수)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지중해 해양경계, 인류공동유산, EEZ 어업 활동 등	
		오후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7.9.(목)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공해 어업, BBNJ, BBNJ RFMO 등	
		오후		생물자원 워크숍	
	7.10.(금)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유엔해양법협약 변경 절차, 극지 어업, 대체에너지	
		오후	Hotel Mediterranean	서술 시험	
	7.11.(토)	오전	SYMi Island, Greece	현장학습 및 네트워크	
		오후			
	7.12.(일)	오전	휴일	휴일	
		오후			
	7.13.(월)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해양법,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구역, 국가소송 등	
		오후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7.14.(화)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해저인프라 보호, BBNJ 이행, 주권 국가 소송	
		오후		구역 기반 관리 수단 워크숍	
	7.15.(수)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관할권 이원 해양환경 분쟁 해결, 심해저 광물 개발, 기후변화 등	
		오후		ICJ & ITLOS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포럼	
	7.16.(목)	오전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ISA와 BBNJ 관계, 해저광물개발 현안, 그림자 선단	
오후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7.17.(금)	오전	Hotel Mediterranean	구두시험		
	오후		졸업식		
7.18.(토)	오전	로도스(10:55)→헬싱키(15:00)	이동	AY1862	
	오후				
7.19.(일)	오전	헬싱키(17:30)→인천(11:20) 김포(14:00)→부산(15:05)	이동	AY041 KE1819	
	오후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유엔해양법협약 기반 해양안보 현안(해저케이블, 그림자 선단 등)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지식 함양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해양안보 현안 관련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문성 강화 및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목적 달성 ○ 주요 성과				

	- (국제법 기반 해양안보 현안 분석을 위한 이론 및 실무 역량 강화) 해저케이블, 그림자 선단, BBNJ 및 해양환경 안보, 기후안보(해양기후변화) 등 해양법 기반 해양안보 현안의 쟁점 해석 강의 및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전문성을 강화 - (해양안보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Tara Davenport, Robert Beckman, Tomas Heidar, Anna Petrig, B. Oxman 등 해양법 및 해양안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련 연구 협력 기반 구축 - (해양안보 현안 대응 및 관련 연구기반 확보) 중첩수역에서 해저케이블 관리 문제, 공해 및 EEZ에서의 해저케이블 손상 방지 및 복원 문제, 그림자 선단 관리 및 대응 문제, 해양환경(해양기후변화 등) 보호 등 환경안보 문제, BBNJ 및 ISA 등 관할권 이원 자원 확보 등 에너지 안보 문제 등 해양안보 현안 관련 주요국 대응 현황 기초 자료 확보 및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래 연구기반 확보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해양안보 관련 현안 및 국제적 논의 사항을 내부 세미나 등을 통해 공유 - 해저케이블 관련 현안 및 국제법 해석 등에 관한 내용을 UNODC(UN마약범죄사무소) 등 관련 국제연구사업에 적용 및 공유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해저케이블 보호 및 복구 관련 관할권 문제 및 해저케이블 보호 구역 등 행정조치 관련 국가 권한의 한계,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해저케이블 관계, 그림자 선단 대응을 위한 국제 포럼, BBNJ 도입 이후 기후안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관할권 이원 국가 관할 변화, BBNJ 발효 이후 ISA를 통한 심해저 광물 개발 제도 영향 및 에너지 안보, 국제해협에서의 무인선박 및 무인잠수정 지위 및 대응 방안과 관련된 논의 자료를 활용하여 KMI 동향분석 등 작성 -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차년도 내부 연구 과제 제안 및 국제공동연구 과제 지속 추진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없음

【별지】 국외출장 주요 업무(결과)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업무	(6.28.(일))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 및 리셉션 참석
수행계획	□ (오후 16:00 ~ 17:00) 오리엔테이션 - 참석자 : 민영훈 전문연구원 - 장소 : Mediterranean Hotel - 내용 : 수업 자료 배포 및 전문가 발표(N. Skourtos) - 발표 : The island of Rhodes and the origins of the legal order of the sea □ (오후 17:00 ~ 19:00) 웰컴 리셉션 - 참석자 : 민영훈 전문연구원 - 장소 : Mediterranean Hotel - 내용 :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담당자 및 책임자 리셉션
수행결과	□ (오후 16:00 ~ 17:00) 오리엔테이션 - (발표자 : Meletis A.) 로도스섬 소개를 통해 고대 로도스섬이 해상무역과 로도스 해법(Lex Rhodia)을 형성했고, 현대 국제해양법 및 해양질서 발전에 미친 역사적, 법적 의의를 설명 □ (오후 17:00 ~ 19:00) 웰컴 리셉션 - (설명자 : Olivia Decker) 로도스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전체 일정 설명, 웰컴팩 증정 및 내용 설명, 강의 장소(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안내 등
업무	(6.29.(월))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및 리셉션 참석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1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1. 해양법 역사 및 개요, 2. 영해 및 접속수역, 3. 배타적경제수역 개요 □ (오전 15:30 ~ 18:00)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아이스 브레이크 리셉션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Mediterranean Hotel - 내용 : 참석자 및 강사 리셉션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1일차 수업 참석 - (1. 해양법 역사 및 개요(강사 : K Baumert)) 1930년 헤이그 회의, 제1-3차 해양법회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1994년 제11부 이행협정 채택 등 해양법 채택 관련 주요 역사 및 협상 내용 개관 • 유엔해양법협약 패키지 딜 접근방식, 합의(컨센서스)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 도입, 1994년 심해저개발 관련 이행협정 체결 등에 관한 배경 및 특징 강의 - (2. 영해 및 접속수역(강사 : A. Petrig))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영해 폭(12해리) 결정 과정,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 제3국의 무해통항권 보장 등 강의 • 기선으로부터 영해 외측 24해리까지 관세, 검역, 이민 등에 관한 집행관할권 행사 가능 해역, EEZ와 중첩되어 설정된 해역 등 접속수역 특징 등 강의 - (3. EEZ 제도 개요(강사 : A. Petrig)) 영해 기선 200해리 해역, 200해리 선포, 해수면, 수중, 해저, 하층토의 생물 및 무생물 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해역,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가장 역사가 짧은 해역 등 EEZ에 관한 일반적 내용 강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오후 17:00 ~ 19:00) 웰컴 리셉션 - (주최자 : L. Mayer) 로도스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강사 소개, 주요 내용 및 인적 네트워크 소개, 향후 비전 등 설명 및 네트워크 구축
업무	(6.30.(화))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및 워크숍 참석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2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4. 항해(해협과 군도 수역), 5. 해양의 기원과 대륙, 6. 해저공간지도 및 제76조
	□ (오전 15:30 ~ 18:30) 1차 워크숍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항해 워크숍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2일차 수업 참석 - (4. 항해(해협과 군도수역)(강사 : K Baumert)) 공해 또는 EEZ 사이를 연결하는 국제해협, 중지되지 않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해협, 군도수역 항해 등을 비교하여 개별 해협의 지위 및 기국의 권한 등을 강의. · 해협은 명칭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지형과 해역의 연결, 항해의 형태로 결정 - (5. 해양의 기원과 대륙(강사 : L. Mayer)) 해양과 대륙의 지질학적 형성과 상호작용, 대륙붕, 해저 지형의 특성과 해양경계 획정시 고려사항, 해양자원 관리 및 국제해양법상 법적 의미 등을 강의 - (6. 해저공간지도 및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강사 : L. Mayer)) 대륙붕 한계 설정 방법(Hedberg Line, Gardiner Line 등), 대륙변계(FOS, Foot of Slope) 결정, 해저 지형 맵핑 방법(다신희 음파 탐지기 등), 북극 해역 대륙붕 한계에 관한 최근 CLCS 결정 등에 대해 강의 □ (오후 15:30 ~ 18:30) 1차 워크숍(항해) - (영해 및 무해통항) 5개 그룹(5개 국가 가상 설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 무기운송, 무인선박, 항행의 자유와 국가안보를 배경으로 다양한 규제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범위를 고려하여 쟁점에 대한 국가별 입장을 정리하여 협상문을 작성 및 발표 - (배타적경제수역 및 국제해협)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 역사적 수역, 군함 통항 제한 등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적용가능한 규정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개별 협상문을 작성하여 논의
업무	(7.1.(수))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참석 및 한-그리스 해양정책협의회 발표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3일차 수업 참여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7. 대륙붕 제도 개요, 8. 해양과 기후변화, 9. 북극의 확장 대륙붕
	□ (오전 15:30 ~ 18:30) 한-그리스 해양정책협의회 발표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University of Aegean - 발표주제 : 한국의 해양안보 현안 및 국제협력 방향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3일차 수업 참석 - (7. 대륙붕 제도 개요(강사 : E Mendenhall)) 대륙붕 제도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와 제82조, 대륙붕의 법적 성격, 국가의 주권적 권리, 대륙붕 한계 획정 및 경계 획정 원칙을 체계적으로 설명함 · 확장대륙붕, CLCS의 역할, 정착성 생물,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북해대륙붕 사건 등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주요 판례와 국가관행을 통해 현대 대륙붕 제도의 적용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강의 - (8. 해양과 기후변화(강사 : L. Mayer)) 해양은 지구 기후와 탄소순환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로, 온실가스 증가가 해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 해류 변화 및 북극 해빙 감소를 초래하는 과정을 과학적 자료로 강의 · 기후변화가 해양환경과 연안국의 권리, 해양경계 및 UNCLOS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해양관측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9. 북극의 확장대륙붕(강사 : L. Mayer)) 북극 대륙붕의 형성과 해저지형 조사기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수심측량과 해저지도 작성이 대륙붕 한계 설정 및 과학적 연구의 핵심 기반임을 제시함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른 연장대륙붕 획정과 기후변화, 자원개발, 북극국가의 관할권 주장을 분석하며, 정확한 해저측량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오전 15:30 ~ 18:30) 한-그리스 해양정책협의회 발표(해상 취소됨) - 주최측 사정으로 한-그리스 해양정책협의회가 9월 이후로 연기됨(별첨 3 참조) -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업무	(7.2.(목))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및 워크숍 참석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4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10. 해양과학조사 제도 개요, 11. 환경법 개요, 12. 공해제도 개요 □ (오전 15:30 ~ 18:30) 2차 워크숍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Mediterranean Hotel - 내용 : 해양과학조사 워크숍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4일차 수업 참석 - (10. 해양과학조사 제도 개요(강사 : R. Long)) 유엔해양법협약 제13부를 중심으로 해양과학조사(MSR)의 개념, 법적 원칙, 연안국 동의제도, 해양구역별 규율체계를 설명하고 국제협력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제시 · BBNJ 협정과 연계하여 해양유전자원 연구, 조사장비 운영, 자율관측기술, 분쟁해결 및 최적가용과학(Best Available Science)의 역할과 향후 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 (11. 환경법 개요(강사 : R. Long))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를 중심으로 해양환경 보호·보전의 일반 의무, 국가관할권, 오염규제, 집행체계와 최근 ITLOS-ICJ 자문의견을 통해 발전한 국제법 원칙을 종합적으로 설명 ·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BBNJ 협정, 지역해양협력, 국가별 관할권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연계하여 현대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 - (12. 공해제도 개요(강사 : B. Oxman))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으로 공해 자유가 언급된 이래 그로티우스의 자유해론을 통하여 공해 자유 원칙이 확립됨을 설명 · 공해는 연안국 영해, 군도수역, EEZ를 제외한 해역으로 항행의 자유 등 일부 공해 자유는 EEZ에서도 적용 □ (오후 15:30 ~ 18:30) 2차 워크숍(해양과학조사) - (해수면 상승과 섬의 지위)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잠수가 되거나 소멸할 경우 확장대륙붕의 법적 지위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의 '최종적·구속적' 효력을 검토하는 사례 · 찬반 입장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와 제121조를 해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경계와 확장대륙붕 유지 여부를 법적 근거와 함께 주장 - (Seabed 2030과 해양과학조사) 인류 공동이익을 위한 전 세계 해저지도 구축이 UNCLOS상 해양과학조사에 해당하는지와 연안국 사전동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사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해저지도의 공익성과 연안국 주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MSR 해당 여부와 허가제도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논증 - (바다거북 생물보호) 공해에서 부착한 생물기록장치가 연안국 EEZ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연안국 동의를 필요한지를 다루는 해양과학조사 분쟁 사례 • 국가 A 또는 국가 B를 대리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3부와 EEZ 관할권, 생물기록장치 자료의 법적 성격을 근거로 주장 - (유엔해양법협약 최종의정서 부속서 II(Annex II) 적용 범위) 유엔해양법협약 최종의정서 Annex II의 특별한 대륙붕 획정공식을 케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을 검토하는 사례 • Annex II의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를 분석하여 케냐의 적용 가능 여부를 UNCLOS 규정과 협상 경과를 근거로 논증
업무	(7.3.(금))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참석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5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13. 유엔해양법회의의 협상, 14. 심해저 제도, 15. 분쟁해결 개요
	□ (오전 15:30 ~ 18:30)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Mediterranean Hotel - 내용 :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5일차 수업 참석 - (13. 유엔해양법회의의 협상(강사 : B. Oxman)) 해양법회의는 5개 지역그룹 기반 조직으로 구성되어 3개의 주요 위원회가 운영 • 부분의 실질적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공식 기록 없이 진행되어 협상의 유연성을 확보 하였으며 컨센선스 도출을 목표로 한 협상 방식 채택 - (14. 심해저 제도(강사 : E. Mendenhall)) 심해저 광물자원의 종류와 개발 필요성, 국제해저구역(Area)의 법적 개념, UNCLOS 제11부 및 국제해저기구(ISA)의 역할을 중심으로 심해저 제도의 기본 체계를 설명 • 인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Humankind) 원칙의 형성과 발전, 형평한 이익공유, 국제관습법적 의의 및 BBNJ 협정과의 연계를 통해 심해저 거버넌스의 핵심 쟁점을 분석 - (15. 분쟁해결 개관(강사 : B. Oxman)) 스국가는 명시적 동의 없이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분쟁해결조항은 관할권 동의 여부와 범위를 명시하는 중요 기능을 수행 □ (오후 15:30 ~ 18:30)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업무	(7.6.(월))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및 특강 참석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6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16. 대륙붕 외측 한계, 17. 기선, 18. 해양경계
	□ (오전 15:30 ~ 18:30) 특강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주제 : 해저 전선 및 관선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6일차 수업 참석 - (16. 대륙붕 외측 한계(강사 : T. Heidar)) 대륙붕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UNCLOS 제76조에 따른 외측대륙붕의 결정 기준, Hedberg-Gardiner 공식, 최대 한계 및 CLCS의 권한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함 • 외측대륙붕 획정과 경계획정의 법적 차이를 분석하고, Bangladesh/Myanmar, Ghana/Côte d'Ivoire, Mauritius/Maldives 사건을 통해 ITLOS의 판단기준과 주요 법리를 검토함 - (14. 기선(강사 : C. Schofield)) 유엔해양법협약상 기선제도의 의의와 정상기선, 직선기선, 암초·하구·만·군도기선 등 다양한 기선의 법적 요건과 설정기준, 해양경계 획정에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의 • 기선 설정을 둘러싼 국제판례와 국가관행,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선의 변화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해양관할권 유지와 국제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함 - (15. 해양경계(강사 : S. Fietta))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경계획정 원칙과 국가 간 합의의 우선성, 묵시적 합의, 국제재판을 통한 해양경계 획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설명 • 등거리선 3단계 접근법과 섬의 효과, 해안선 길이, 절단효과, 관련 국제판례를 분석하여 형평한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법적 판단기준과 적용방법을 강의 □ (오후 15:30 ~ 18:30) 특별강의(해저 전선 및 관선, K Bressie) - 해저케이블과 해저파이프라인의 기술적 특성, 세계적 중요성, 설치·유지관리 과정을 설명하고 국제 통신과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을 제시함 -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의 부설 자유, 연안국 관할권, 환경규제 및 보호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 어업, 투묘, 자연재해, 악의적 훼손 등 주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예방적 경로설계와 보호구역, 협력체계, 법적 책임을 통한 보호방안을 제시
업무	(7.7.(화))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및 워크숍 참석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7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19. 해양경계에서 섬의 지위, 20. 중첩 해역에서의 활동, 21. 경계획정 워크숍 개요 □ (오전 15:30 ~ 18:30) 워크숍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Mediterranean Hotel - 주제 : 해양경계 획정 워크숍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7일차 수업 참석 - (19. 해양경계에서 섬의 지위(강사 : C. Schofield))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중심으로 섬, 암석, 간조노출지, 인공섬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고 해양경계 획정에서 각 지형의 법적 효과를 분석함 • 국제사법재판소와 남중국해 중재판정 등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섬의 효과를 전부·부분·배제하는 기준과 공평한 해양경계 획정 원칙을 설명함 - (20. 중첩 해역에서의 활동(강사 : S. Fietta)) 미획정 해역에서 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제83조에 따라 선의로 협상하고, 잠정약정을 체결하며, 최종 경계획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을 강의함 • 가이아나·수리남, 가나·코트디부아르, 소말리아·케냐 등 국제판례는 자원개발과 일방적 조치의 허용 범위를 제시하며 분쟁관리 기준을 구체화함. - (21. 경계획정 워크숍 개요(강사 : C. Schofield)) 해양경계 협상은 국제법에 근거한 선의의 협상과 국가이익의 균형을 바탕으로 단일 해양경계 설정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 안정성과 상호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용성을 추구함 ·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법적 근거 제시, 단계적 양보, 신뢰 구축, 적절한 협상전략 및 전술의 활용이 중요함. □ (오후 15:30 ~ 18:30) 제3차 워크숍(해양경계 확정) - (객관적 사실) 양국은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해양경계 획정을 추진하지만, 어업·석유개발·환경보호·항행안전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함. - (Kodiak 입장) 항행안전과 국가안보, 해상운송로 보호 및 해양 석유·가스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정적 해양경계와 자원개발 권한 확보를 중시함. - (St. Elias 입장) 전통적 어업권 회복과 Portlock Bank 접근, Middleton Island 주변 환경보호 및 잠재적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공정한 해양경계 획정을 요구함. - (워크숍) 참석자를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을 Kodiak과 St. Elias로 구분. 개별 그룹별로 협상을 진행. 마지막에 협상 결과를 발표.
업무	(7.8.(수))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참석 및 네트워크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8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22. 지중해 해양경계, 23. 인류공동유산, 24. 배타적 경제수역의 어업 □ (오후 15:30 ~ 18:30)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Mediterranean Hotel - 내용 :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8일차 수업 참석 - (22. 지중해 해양경계(강사 : A. Kolliopoulos)) 지중해 해양경계는 UNCLOS 제15-74-83조에 따라 형성한 해결을 목표로 하며, 등거리선과 관련 사정을 고려하는 국제판례가 주요 기준으로 발전 · 동지중해 해양자원 개발과 지정학적 경쟁으로 해양경계 협정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해결 분쟁은 국제법과 협상을 통한 안정적 해결의 필요성을 보여줌 - (23. 인류공동유산(강사 : F. Millicay)) 인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원칙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UNCLOS 제11부를 통해 심해저 자원의 평화적 이용과 형평한 이익 공유 원칙을 설명함 · 국제해저기구(ISA)의 조직과 권한, 심해저 광물개발 규범, 후원국의 책임, BBNJ와 생물 유전자원 논의를 통해 새로운 해양거버넌스 과제를 검토함. - (24.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강사 : D. Balton)) 국제어업법은 어업의 보존, 관리, 개발과 관련된 국제법의 한 분야로 어족자원의 분류와 관리 방식을 규정 · 최근 목표 어종의 남획, 비목표 어종의 혼획 문제, 해저 서식지 파괴, IUU 어업,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로 인한 영향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오후 15:30 ~ 18:30)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업무	(7.9.(목))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및 워크숍 참석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9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25. 공해에서의 어업, 26. 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BBNJ), 27. BBNJ와 지역수산기구(RFMOs) □ (오후 15:30 ~ 18:30) 제4차 워크숍 - 참석자 : 민영훈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생물자원 워크숍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9일차 수업 참석 - (25. 공해에서의 어업(강사 : T. Heidar)) 공해어업은 UNCLOS와 UN 어족자원협정(UNFSA)을 기반으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며, 국가 간 협력과 과학적 관리원칙을 중심으로 운영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기국·항만국 관할권,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과 집행체계를 통해 공해어업의 보전과 효과적 관리방안을 강의함 - (26. 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BBNJ)(강사 : F. Millicay)) BBNJ 협정의 성립 배경과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해양유전자원, 해역기반관리수단(ABMT), 환경영향평가(EIA)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해양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함 • BBNJ 협정의 이익공유, 역량강화, 해양기술 이전, 제도적 운영체계와 분쟁해결 절차를 분석하고, 향후 COP에서 결정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함. - (24. BBNJ와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s)(강사 : L.N. Nguyen)) BBNJ 협정과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의 권한관계를 분석하고, '기존 제도를 훼손하지 않는다(not undermining)' 원칙 아래 협력과 조화를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검토함 • ABMT, 해양보호구역(MPA), 환경영향평가(EIA) 제도의 연계를 설명하고, 정보공유, 협력체계, 기존 정립을 통한 BBNJ와 RFMO의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함 □ (오후 15:30 ~ 18:30) 제4차 워크숍(생물자원) - (그룹 1) 연안국 EEZ에서 허가 없이 항행한 어선의 나포와 벌금·구금 조치의 적법성, ITLOS의 관할권 및 신속석방 요건을 검토하는 사례 - (그룹 2) RFMO 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운반선의 항만 입항과 어획물 양륙 허용 여부를 항만국 조치협정(PSMA)에 따라 검토하는 사례. - (그룹 3) 연안국 허가조건을 위반한 참다랑어 어선에 대한 기국의 국제책임과 연안국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례. - (그룹 4) 외측대륙붕이 주장되는 공해에서 저서생물을 채취한 어선에 대해 연안국이 단속권과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사례 - (그룹 5) BBNJ 협정상 중앙북극해 공해에 영구적 상업어업 금지 ABMT를 설정할 권한과 북극어업협정과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사례 - (워크숍) 참석자를 5개 그룹 A, B국가로 구분(총 10개 그룹)하여 사례마다 각 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
업무	(7.10.(금))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참석 및 서술 시험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10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28. 유엔해양법협약 개정 제도, 29. 중앙 북극해 어업, 30. 대체 에너지 자원 □ (오전 15:30 ~ 18:30) 서술시험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Mediterranean Hotel - 내용 : 서술 시험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10일차 수업 참석 - (28. 유엔해양법협약 개정 제도(강사 : L.N. Nguyen)) 유엔해양법협약은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살아있는 조약으로, 개정절차·준용규정·국제재판·국가관행·이행협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해석의 확장이 이루어짐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특히 1995 어업협정과 2023 BBNJ 협정은 예방원칙·생태계 접근법 등을 반영하여 국제해양법의 현대적 발전과 공동이익 보호를 강화하였음. - (29. 중앙 북극해어업(강사 : D. Balton)) 기후변화와 해빙 감소로 중앙북극해의 어업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연안국과 주요 조업국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예방적 국제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 중앙북극해 어업협정은 비규제 상업어업 금지, 공동 과학연구, 합의제 의사결정, 원주민 지식 반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거버넌스를 강화함. - (30. 대체에너지자원(강사 : M. Gavouneli)) BBNJ 기존 대형 석유, 가스 플랫폼, 파이프라인 중심에서 현재 케이블을 통한 전력 전송,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 사용이 전환되고 있음 • 특히 환경영향평가, 항해, 어업, 관광 등 타 해양활동과의 충돌 문제의 법적 규율 필요성이 증가 □ (오후 15:30 ~ 18:30) 서술시험 - 1~2주차 강의 내용에 대한 서술 시험
업무	(7.13.(월))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참석 및 네트워크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11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31.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 32. 공해 해양보호구역과 구역기반관리 수단 33. 국제소송개요 □ (오후 15:30 ~ 18:30)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Mediterranean Hotel - 내용 :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11일차 수업 참석 - (31.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강사 : R. Beckman)) 유엔해양법협약은 IMO 협약을 준거규칙으로 수용하여 선박오염 규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국·항만국·연안국의 관할권과 집행 권한을 체계적으로 구분함 • IMO는 MARPOL과 관련 협약을 통해 선박기인 오염, 특별해역, 온실가스 배출을 규율 하며, 국제해운의 탈탄소화와 해양환경 보호를 추진함. - (32. 공해 해양보호구역과 구역기반관리 수단(강사 : D. Freestone)) 공해 해양보호구역과 해역기반관리수단의 필요성, 법적·제도적 한계를 설명하고, BBNJ 협정상 정의와 보호대상 지역의 과학적 식별절차를 검토함. • IMO, 국제해사기구, 지역수산관리기구와 지역협약이 운영하는 특별해역, 어업폐쇄구역, 환경보호구역 사례를 통해 공해 생물다양성의 다층적 관리체계를 제시함. - (33. 국제소송개요(강사 : A. Miron)) BBNJ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강제적 분쟁해결 구조와 재판소 선택, 외교적 수단, 관할권 제한·예외 및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절차적 유연성을 설명. • ITLOS의 신속석방·잠정조치·권고적 의견·해양경계·심해저 분쟁 사례를 통해 국제해양소송의 확대와 재판협상을 활용한 해결방식을 분석함 □ (오후 15:30 ~ 18:30)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업무	(7.14.(화))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및 워크숍 참석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12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34. 해저 핵심 인프라 보호, 35. BBNJ협정: 사르가소해위원회(Sargasso Sea Commission),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36. 주권 국가 소송 □ (오전 15:30 ~ 18:30) 워크숍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공해 구역 기반 관리 수단(ABMTs) 워크숍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12일차 수업 참석 - (34. 핵심 해저 인프라 보호(강사 : R. Beckman)) 해저케이블·전력선·파이프라인 등 핵심수중인프라의 훼손 위험과 UNCLOS상 기국 관할권, 연안국 권한 및 제113조의 법적 한계를 분석함 · 유엔·지역기구·국가 차원의 정보공유, 예방·대응·복원력 강화와 국내입법 사례를 검토하고, 지정학적 갈등 속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 (35. BBNJ협정:사르가소해위원회(강사 : D. Freestone)) 사르가소해의 독특한 부유 해조류 생태계와 회유성·고유종의 생태적 가치를 설명하고, 어업·오염·기후변화·해운 등 복합 위협을 분석함 · 해밀턴 선언과 사르가소해위원회의 국제협력 성과를 검토하고, BBNJ 협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설정과 통합적 공해 거버넌스 발전 가능성을 제시함. - (36. 주권국가소송(강사 : A. Loewenstein)) B주권국가 간 해양분쟁은 UNCLOS 제15부에 따라 평화적 수단을 우선 활용하되,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재판과 중재를 통해 구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당사국의 동의와 관할권 요건을 전제로 함. · 강의는 ITLOS, ICJ, 부속서 VII 중재의 선택, 관할권 제한과 예외, 잠정조치·신속석방·권고적 의견 등 특별절차와 주요 판례의 전략적 활용을 국가 소송전략 수립의 핵심 요소로 제시함 □ (오후 15:30 ~ 18:30) 제5차 워크숍(공해 지역기반관리수단(ABMT)) - (주요내용) 버뮤다는 사르가소해에 대규모 보호구역 설정하고, 선박 항로·속력, 해조류 채취, 해저케이블 설치·수리에 제한을 부과하도록 BBNJ COP에 제안함 - (그룹 1 버뮤다와 사르가소해위원회) 버뮤다와 사르가소해위원회는 해운이 생태계와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보호구역의 필요성과 BBNJ 협정 목적과의 합치성을 논증해야 함. - (그룹 2 BBNJ 사무국) BBNJ 사무국은 제안의 공개·예비검토·협의·평가 절차와 COP의 결정 선택지를 검토하고, IMO와 공동작업반 구성 필요성을 자문해야 함. - (그룹 3 IMO 회원국과 해운단체) IMO 회원국과 해운단체는 항행의 자유, 운송비용, 선사 간 경쟁조건을 고려하여 IMO 권한을 훼손하지 않는 규제방안을 제시해야 함. - (그룹 4 해양법 전문가) 해양법 전문가는 UNCLOS상 기국 전속관할권과 항행의 자유를 분석하고, BBNJ COP 조치의 적법성과 IMO 규율 필요성을 평가해야 함 - (그룹 5, 민간기업과 ICPC) 민간기업과 ICPC는 해저케이블 설치·수리 허가 및 모자반 채취금지가 공해의 자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기존 산업지침의 충분성을 주장해야 함. - (워크숍) 그룹을 5개로 구분하여 주어진 역할에 따라 BBNJ협정문과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법에 일치한 대안을 제시하고 논증해야함
업무	(7.15.(수))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및 기후변화 패널 토론 참석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13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37. 분쟁 해결 제도와 국가 관할권 이원 해양환경, 38. 심해저 광물 개발에 관한 제11부, 39. 기후변화 체계와 해양 거버넌스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오전 15:30 ~ 18:30) 패널 토론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ICJ 및 ITLOS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에 관한 패널 토론(R. Beckman, D. Freestone, J. Harrison, A. Loewenstein, A. Miron, T. Davenport)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13일차 수업 참석 - (37. 분쟁해결제도와 국가 관할권 이원 해양환경(강사 : J. Harrison))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와 관할권, ITLOS-ICJ 중재재판의 선택기준 및 예외를 판례와 함께 분석하고, 국제해양분쟁 해결절차의 실무를 설명함 • ITLOS 최신 판례와 심해저채굴, 잠정조치, 권고적 의견 등 최근 분쟁동향을 검토하며, 국제해양법 분쟁해결기구의 역할 확대와 발전 방향을 제시함. - (38. 심해저 광물 개발에 관한 제11부(강사 : T. Davenport)) 국제해저구역과 광물자원의 인류공동유산 지위, UNCLOS 제11부와 1994년 이행협정의 관계, 국제해저기구의 조직·권한 및 심해저 광업 규제체계를 설명함. • 개도국의 유보광구 참여, 해양환경 보호, 경제적 이익의 공평한 배분, 분쟁해결 및 계약자를 후원하는 국가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39. 기후변화 체계와 해양 거버넌스(강사 : A. Miron))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온난화·해수면 상승·산성화·생물다양성 감소를 설명하고, IPCC 과학자료가 국제재판에서 최선의 과학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분석함 • UNFCCC·교토의정서·파리협정과 UNCLOS 해양환경 의무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ITLOS-ICJ 권고적 의견을 통한 국가의 엄격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제시함 □ (오후 15:30 ~ 18:30) ICJ 및 ITLOS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에 관한 패널 토론 - 소도서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오염으로 규정하여, 해양환경 보호의무와 국가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한 ITLOS-ICJ 권고적 의견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함. - ITLOS와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위 있는 국제법 해석으로 인정되어, 외교적 압력과 국내외 기후소송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함. - 두 재판기관은 IPCC 보고서를 최선의 이용 가능한 과학으로 수용하여 기후변화의 원인과 피해를 확인하고, 국가의 주의의무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구체화함. - 해수면 상승에도 해양기선과 해양권원을 유지하려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되고 있으며, 영토 상실 국가의 국가성 지속과 국제협력 의무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함. - 기후변화 소송은 해양법·인권법·환경법의 상호작용을 확대하지만, 서로 다른 법체계를 무리하게 결합하지 않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함.
업무	(7.16(목))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수업 참석 및 네트워크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14일차 수업 참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Administration Office of South Aegean Sea Region - 내용 : 40. ISA와 BBNJ의 관계, 41. 심해저 광물 개발 현안, 42. 유엔해양법협약, IMO, 그림자선단 □ (오전 15:30 ~ 18:30)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Mediterranean Hotel - 내용 :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14일차 수업 참석 - (40. ISA와 BBNJ의 관계(강사 : J. Harrison))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환경 분쟁에서 관할권, 청구주체, 과학적 증거, 잠정조치, 손해배상과 권고적 의견을 활용한 보호·책임 체계를 검토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BBNJ 협정과 국제해저기구의 관계를 비혜손 원칙 아래 분석하고, 해양유전자원·ABMT·환경영향평가·역량강화 분야의 협력과 제도적 조정을 강조함 - (41. 심해저 광물 개발 현안(강사 : T. Davenport)) 심해저광업은 핵심광물 확보와 녹색전환 수요, 생태계 훼손 우려, 인류공동유산의 이익공유 및 지정학적 경쟁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영역임 • 후원국의 주의의무, 나우루의 2년 규칙, 예방적 중단 요구, UNCLOS 외 일방적 채굴과 계약자의 잠정조치 신청을 중심으로 규제 쟁점을 분석함.. - (42. 유엔해양법협약, IMO, 그림자선단(강사 : R. Beckman & A. Loewenstin)) 그림자 선단은 제재를 회피하며 노후·무보험 유조선을 운항하고, 허위등록·AIS 차단·해상환적으로 기국과 항만국 통제를 회피하여 환경·항행 위험을 초래함 • IMO 규제의 한계를 검토하고, 무국적선박에 대한 연안국 조치와 UNCLOS상 기국 의무·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한 국제적 대응 가능성을 제시함. □ (오후 15:30 ~ 18:30)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업무	(7.17.(금)) 2026 로즈 해양법정책 아카데미 구두 시험 및 졸업식
수행계획	□ (오전 09:00 ~ 12:30) 구술 시험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Mediterranean Hotel - 내용 : 구두시험 □ (오전 15:30 ~ 18:30) 졸업식 - 참석자 : 민영훈 - 장소 : Palace of the Grand Master of the Knights of Rhodes - 내용 : 졸업식
수행결과	□ (오전 09:00 ~ 12:30) 구술 시험 - 구술시험 응시 및 통과 □ (오전 18:00 ~ 23:00) 졸업식 - 과정 수료 및 학위증(Diploma)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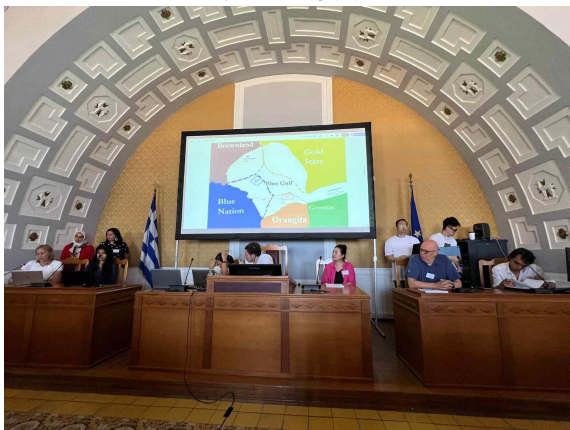
[별첨 1] 사진



<수업 전경(1)>



<수업 전경(2)>



<제1차 워크숍(항해) 전경>



<제2차 워크숍(해양과학조사) 전경>



린도스 현장학습 단체사진



<제3차 워크숍(해양경계) 전경(1)>



<제3차 워크숍(해양경계) 전경(2)>



2주차 갈라저녁 전경



2주차 갈라저녁 ITLOS 소장 인사말씀



수업전경



수업 중 쉬는 시간 전경



졸업식 사진

Rhodes Oceans Scholar Diploma

Young Hun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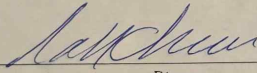
*is hereby recognized as having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urse of study established by the
Governing Board for the Twenty-ninth Session of the*

Rhodes Academy of Oceans Law and Policy
Rhodes, Gree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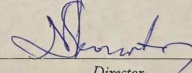
28 June to 17 July 2026

The Rhodes Academy is a co-operative undertaking of the
Aegean Institute of the Law of the Sea and Maritime Law (Rhodes, Greece)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Law of the Sea Institute of Iceland (Reykjavik, Iceland)
Netherlands Institute for the Law of the Sea, Utrecht University (Utrecht, the Netherlands)
School of Marine Science and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New Hampshire (USA)

With associate sponsorship of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Busan, Korea) • Schmidt Ocean Institute (Palo Alto, USA)



Director



Director

[별첨 3] 한-그리스 해양정책협의회 취소 이메일

보낸 사람 양미란 <mryang22@korea.kr>

2026-06-04 16:53:45 [GMT +09:00 (서울, 도쿄)]

연관 메일 보기 | 주소 등록 수신 거부

발송 국가: KR 🇰🇷 (125.60.33.78)

받는 사람 민영훈 <yhmin@kmi.re.kr>

① 26-06-04 17:16:59 에 도착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주그리스대사관 양미란 서기관입니다.

관련 사항을 대사님께 보고드렸으며, 대사님께서서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안 중 ③ 다른 계기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판단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6월 26일 또는 7월 초 행사 개최를 계획 시 저희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Maria Gavouneli 교수님과 로도스 아카데미 측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는데요.

7월 초 행사 개최는 로도스 아카데미가 협조의 어려움을 표하면서 로도스에서의 행사 개최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6월 26일 행사 개최안은 Gavouneli 교수님이 다른 일정으로 협의회 참석이 불가할뿐 아니라, 대학생들 기말 시험기간인지라 모객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 교수님은 9월 21일 주에 그리스 연구기관인 ELIAMEP이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우리 KMI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 그 때 사이드 세미나처럼 **대사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대사님께서서는 발제자 섭외와 모객이 보다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Gavouneli 교수님의 네트워크 활용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9월 컨퍼런스 개최 시 사이드 행사로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결정**하셨습니다.

대사관에서 먼저 박사님께 섭외 연락을 드렸고, 바쁜신 상황에서도 일정 조율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는데 이렇게 회신을 드리게 되어 민망하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는 마음입니다.

다만 저희 대사관에서는 지역 해양안보 정세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적·법적 논의가 매우 시의성이 있고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9월 세미나에서도 가급적 동일한 주제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박사님과 주제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며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위 주제에 적확하게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관련 사안은 전통적 해운국가인 그리스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업비 중 여비로 한국에서 발제자 한 분 정도를 모셔올 수 있는데요,

아직 KMI 내 어느 분들이 9월 컨퍼런스에 참석차 출장을 오시는지는 알지 못하나, 박사님께서 출장단에 포함되지 않으신다고 하면 염치불구하고 박사님께 한번 더 발제자 초청 제안을 드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박사님의 일정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박사님께서 상기 고려사항에 대해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사 준비가 당초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여러 변동으로 번거로우셨을텐데 다시 한 번 무척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자의 바램으로는 행사 개최 시기를 떠나 직접 섭외 연락을 드렸던 만큼 박사님을 이번 행사에 발제자로 꼭 모시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보다 구체화되면 다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그리스대사관
양미란 드림

양미란 2등서기관 | MIRAN YANG Second Secretary
주그리스대한민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Hellenic Republic
☎ (+30) 698 403 8423